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2026 Safety Instruction

충북지회 컨설팅 사업 안내

Safety KISA



1

위험성평가 컨설팅

2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4

기타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위험성 결정·관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Safety Control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 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정기 평가

최초평가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

수시 평가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상시 평가

월: 1)노사합동 순회점검 2)아차사고 분석 3)제안제도 실시

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상시평가 수행 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위험성 결정·관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컨설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받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인정 신청 대상 및 인정절차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후, 공단의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인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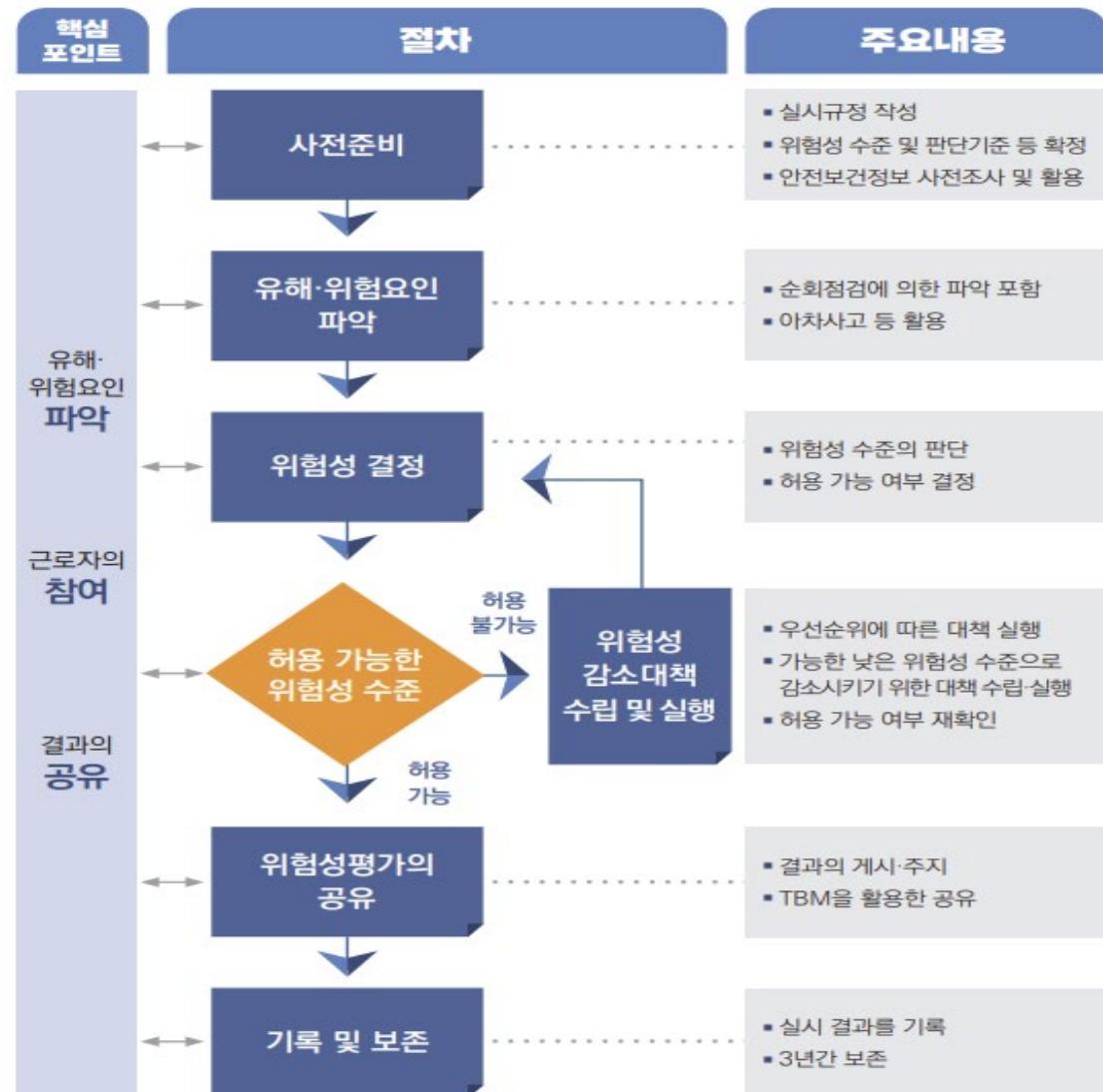
인정 시 혜택

-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만 해당)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 요율 0.2% 감면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실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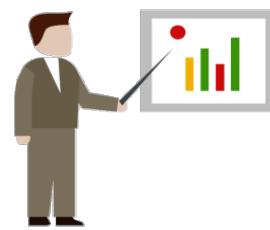
Phase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필요자료 안내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Phase2 현장점검

- 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근로자 참여



Phase3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유
- 3년간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 법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나,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불이익(과태료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사업안내



사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 실태 파악 및 유소견자 결정·관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 컨설팅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 의무 및 보건상조치)에 따른 컨설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S a f e t y C o n t r o l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최초 평가

- 사업장 신설,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정기 평가

- 최초평가 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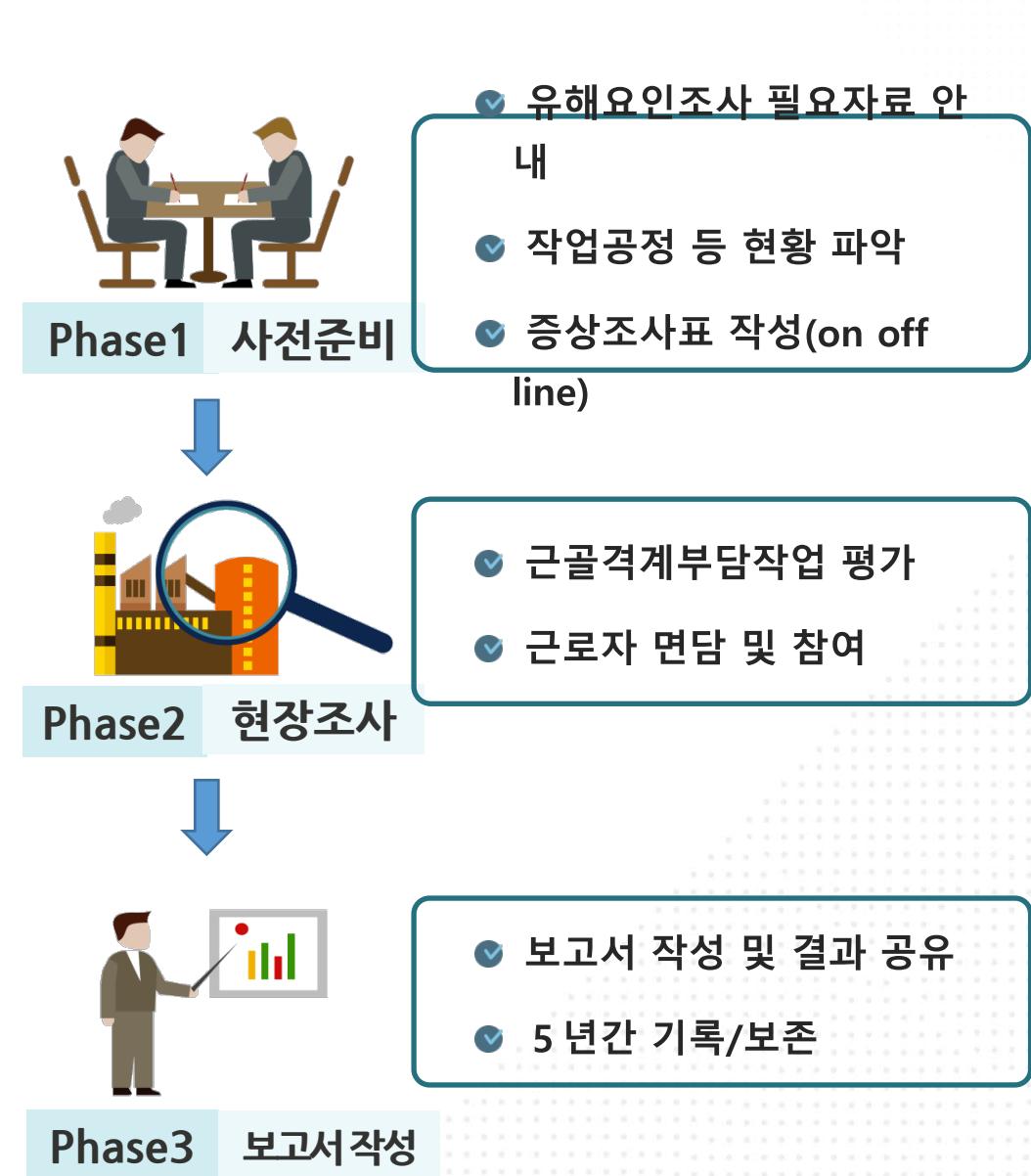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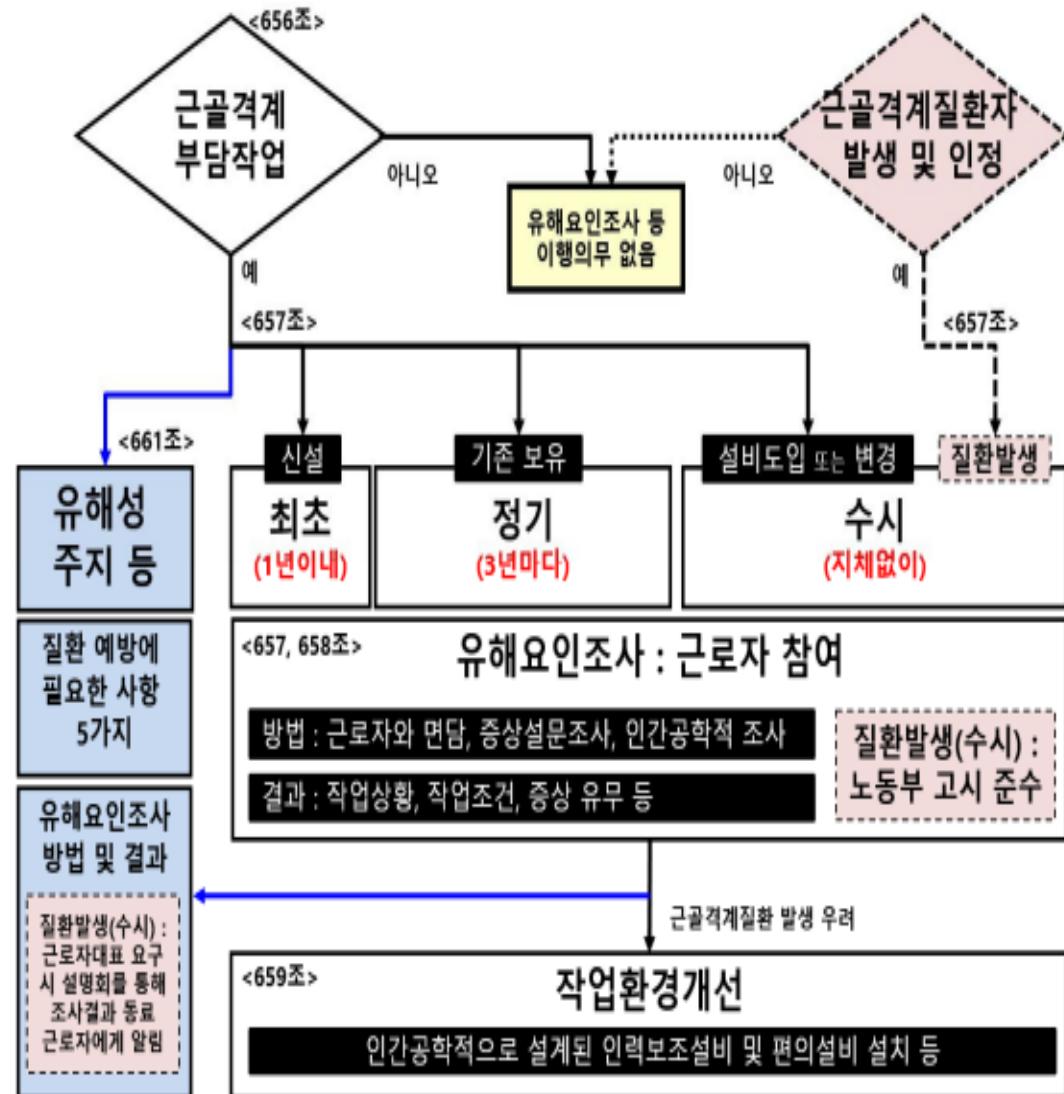
수시 평가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작업환경 발생 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흐름도

도록 흐름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8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확인·심사 받을 수 있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시)에 따른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Safety Control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제출대상

대상 업종

- 대상 업종(13개) 중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증설, 교체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기계·기구 및 설비

- 대상 설비(5종) 설치·이전·변경 시
 -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관리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작업 시작 전”이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 제출 대상 사업(업종)

다음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적용시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적용시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09.02.01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009.02.01
10***	식료품 제조업	2012.07.01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012.07.0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12.07.01	24***	1차 금속 제조업	2012.07.0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07.0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12.07.01
32***	가구 제조업	2012.07.01	33***	기타 제품 제조업	2012.07.0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14.09.13	261**	반도체 제조업	2014.09.13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14.09.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④ 제출 대상 사업(업종) 확인 방법

1)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등록 내용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2)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 → 고용 선택 및 사업장 정보 입력)



① 사업장명은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산재 고용
 검색 사업장명 (주)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업장명을 두글자 이상 입력하세요.
 관할지역 지사찾기 *관할지역은 필수선택 사항입니다.

가입 조회하기

관리번호: []

사업장명	[]
업종	자동차 차체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20] (highlighted)
고용 상시 인원수	122
산재 상시 인원수	124
우편번호	[]
사업장 주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컨설팅 직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④ 전기계약용량 확인 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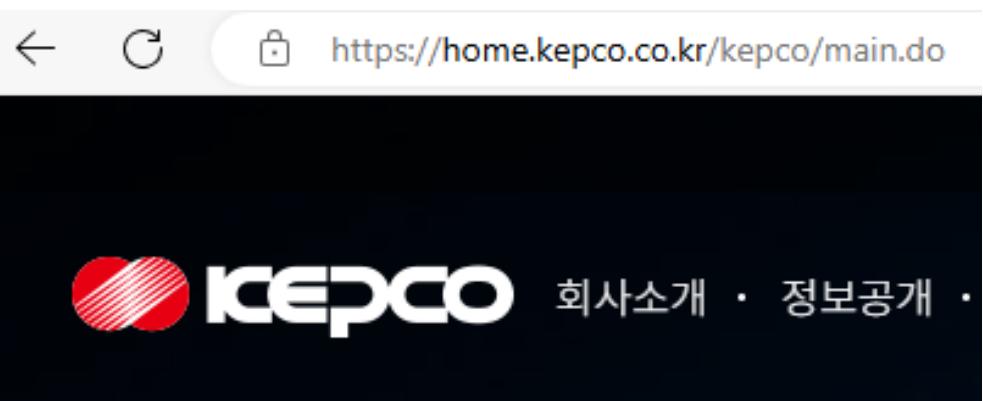
1)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고지서 확인

- 공장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고객사정	
계약증명금	산업용(을)고압A II
계약요금	15
계약기번호	25162018420
계약기별수	360
지상액률	95
전상액률	100
계약전력	500

2) 한국전력공사 문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





● 제출 대상 사업(설비)

아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 ·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표,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제출 대상 사업(설비)

아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 용접 · 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것**
-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 · 제거할 경우 대상)
- (설치)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 (변경)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 · 환기 · 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의 증가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❸ 필요 서류 목록(업종 예시)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자료	<p>가. 공정배관 · 계장도(Piping&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p> <p>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p> <p>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p> <p>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p> <p>바. 화재 ·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컨설팅 직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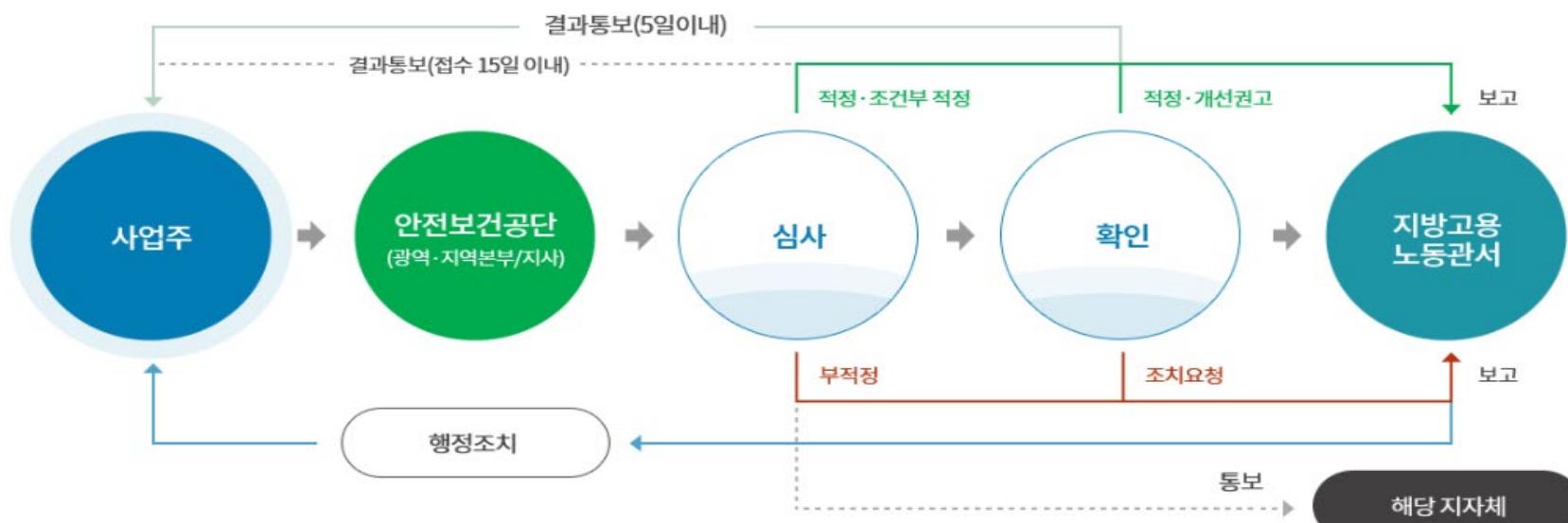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차

④ 수행절차

STEP 01 사전준비	STEP 02 서류검토	STEP 03 보고서 작성·제출	STEP 04 현장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공단현장확인대응

⑤ 심사 및 확인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근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과태료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기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 점검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컨설팅

기타 컨설팅이란?

S a f e t y C o n t r o l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관한 이행상태 점검 등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실시

위험성평가 이행 적정성 평가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자율점검 컨설팅

0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방침 수립/게시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수립
- 화학물질 유해인자 등 위험물질 취급에 관한 관리여부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절차서(위험성평가 규정 및 서식)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련 법령 의무이행 평가 절차 마련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험(종사자 의견청취, 비상대응 모의훈련 등)

✓ 기대 효과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1항(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관한 조치)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성과물

- 안전보건 체계 매뉴얼(한글)

02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실시

✓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선임 및 직무이행실태 적정성
- 관리감독자 업무이행실태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의 적정성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적정성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 기대 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2항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리상의 조치) [이행](#)

✓ 성과물

- 안전보건 체계 매뉴얼(PDF)

03

위험성평가 이행 적정성 평가

내용

- 위험성평가 규정 준수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업무 분장 적절성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확인
- 개선대책 실시 적절성

기대 효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항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이행](#)
- 공정별 위험성평가 수행 적절성을 점검하여 위험성평가 내실화 강화

성과물

- 대상별 위험성평가 평가자료 및 개선대책 수립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DB 작성(엑셀 서식)

04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교육
- 공정별 의무이행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 공정별 위험성평가 표준 유해위험요인 DB 활용
- 위험성평가 절차 및 규정 교육

기대 효과

-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고취
- Q&A Time

05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성
- 중대재해 발생원인 및 개선대책
- 비상조치계획 등 안전보건절차서의 적정성
- 작업계획서의 작성의 적정성
- 근로자 의견청취

기대 효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명령해제
- 현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성과물

- 안전작업계획서 (PPT)

06

자율점검 컨설팅

내용

-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 현장 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 공정별 SOP 작성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기대 효과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태 점검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이행상태 점검

성과물

- 자율점검 컨설팅 보고서 (PDF 등)



기타 컨설팅

C 추진방안

- 점검대상 목록 실태조사 및 분석



<안전관리문서 검토>

- 점검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작성



<공정별 맞춤 매뉴얼 작성>

- 현장점검 및 개선안 도출



<현장 점검>



<인터뷰>

- 결과물 제출



<컨설팅 결과물 제출>

- 제조업 관련자료 및 안전관리 실태 참고문서로 전문적인 분석

- 사전검토자료
 - ✓ 사내안전관리문서
 - ✓ 외부참고자료

- 매뉴얼
 - 위험성평가 규정 개정 및 확인

-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제정
 - 의무확인 점검 체크리스트 제정
 - 공정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현장점검

- 개선방안 도출

- 매뉴얼, 체크리스트 개정

- 보고서

- ✓ 의무이행 평가 보고서

- 성과물

- ✓ 안전보건체계구축 매뉴얼
- ✓ 안전보건법령 의무확인 체크리스트



● 기타 컨설팅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관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Safety is First, KISA is Best

문의 :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안전전컨설팅부
전화: 043)236-0395
팩스: 043)236-0399
변상훈 010-5463-8362
이메일 xplaton@safety.or.kr